

**LOTTE**  
**SHOPPING**

# 파트너사 자가진단표



# 1. 윤리 경영

1-1. 최근 3년간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위반으로 벌금 및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까? 위반 사례가 없다면 사전에 위반 사례 예방 및 위반 사례를 예방하기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습니까?

배점	내용	체크
1	최근 1년간 『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』 및 동법 시행령 위반으로 벌금 또는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사례 있음(규정 위반 이유와 위반 횟수 명시)	
2	최근 3년간 『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』 및 동법 시행령 위반으로 벌금 또는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사례 있음(개인정보 유출, 관리규정 위반 등 이유와 위반 횟수 명시)	
3	『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』 및 동법 시행령 위반 사례 없음	
4	『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』 및 동법 시행령 위반 사례 없으며 관련 법령 개정의 경우 내부규정을 개정하여 사전에 위반사례를 예방함	
5	『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』 및 동법 시행령 위반 사례 없으며 발생 가능한 위반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함	

\*법적 근거

1. 국내법:

『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』 전문

『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(부패방지권익위법)』 제2조

1-2. 최근 3년간 『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』 및 동법 시행령 위반으로 벌금 또는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까? 위반 사례가 없다면 사전에 위반 사례 예방 및 위반 사례를 예방하기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습니까?

배점	내용	체크
1	최근 1년간 『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』 및 동법 시행령 위반으로 벌금 또는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사례 있음(규정 위반 이유와 위반 횟수 명시)	
2	최근 3년간 『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』 및 동법 시행령 위반으로 벌금 또는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사례 있음(개인정보 유출, 관리규정 위반 등 이유와 위반 횟수 명시)	
3	『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』 및 동법 시행령 위반 사례 없음	
4	『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』 및 동법 시행령 위반 사례 없으며 관련 법령 개정의 경우 내부규정을 개정하여 사전에 위반사례를 예방함	
5	『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』 및 동법 시행령 위반 사례 없으며 발생 가능한 위반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함	

\*법적 근거

1. 국내법: 『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』 전문

1-3. 고객 및 임직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절차 및 시스템이 존재합니까?

존재한다면 적절히 운영 되고 있습니까?

배점	내용	체크
1	고객 및 임직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절차 및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음	
2	고객 및 임직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절차 및 시스템이 존재하나 적절히 운영되고 있지 않음	
3	고객 및 임직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절차 및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으나 관련 노력을 업무에 적절히 반영하고 있음	
4	고객 및 임직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절차 및 시스템이 존재하나 적법한 수준으로만 운영되고 있음	
5	고객 및 임직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절차 및 시스템의 세부적인 사항까지 자체적으로 개발 하였으며 적극적인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음	

\*법적 근거

1. 국내법 : 『개인정보 보호법』 전문
2. 해외법 : 『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(2011)』 VIII. 소비자 보호 (6), 『EICC(전자산업시민연대) (2016)』

1-4. 횡령, 부패, 뇌물수수 등 반부패 관련 행위 금지 규정을 포함하여 문서화된 윤리강령 및 행동 지침을 가지고 있습니까? 가지고 있다면 적절히 적용되고 있습니까?

배점	내용	체크
1	횡령, 부정부패, 뇌물수수 등 반부패 관련 행위 금지 규정을 포함하여 문서화된 윤리강령 및 행동지침을 가지고 있지 않음	
2	횡령, 부정부패, 뇌물수수 등 반부패 관련 행위 금지 규정을 포함하여 문서화된 윤리강령 및 행동지침을 가지고 있으나 업무에 적절히 적용되고 있지 않음	
3	횡령, 부정부패, 뇌물수수 등 반부패 관련 행위 금지 규정을 포함하여 문서화된 윤리강령 및 행동지침을 가지고 있지 않으나 업무 전반에 윤리경영 노력을 반영하고 있음	
4	횡령, 부정부패, 뇌물수수 등 반부패 관련 행위 금지 규정을 포함하여 문서화된 윤리강령 및 행동지침을 가지고 있으며 업무 적법한 수준으로만 운영되고 있음	
5	횡령, 부정부패, 뇌물수수 등 반부패 관련 행위 금지 규정을 포함하여 문서화된 윤리강령 및 행동지침을 가지고 있으며 업무 전반에 적절히 적용되어 운영할 뿐 아니라 적극적인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음	

\*법적 근거

1. 국내법 :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(이언주 의원 대표발의, 2013.07.19, 의안번호 6080) 제 159조2항, 사업보고서의 기재할 사항에 다음 항목 추가할 것을 발의 기업 내 위법행위에 대한 내부신고자 보호대책, 뇌물 및 부패 근절을 위한 제도 등 윤리경영에 관한 사항 (발의안 통과 예정)
2. 해외법 : 『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(2011)』 VII. 뇌물공여, 뇌물청탁 및 강요의 방지 (2), (5)

1-5. 내외부 이해관계자가 임직원의 비윤리적 행위 또는 법규 위반이 의심되는 사안에 대한 제보 절차 및 프로그램이 문서상에 존재합니까? 존재한다면 적절히 운영되고 있습니까?

배점	내용	체크
1	내외부 이해관계자가 임직원의 비윤리적 행위 또는 법규 위반이 의심되는 사안에 대한 제보 절차 및 프로그램이 없음	
2	내외부 이해관계자가 임직원의 비윤리적 행위 또는 법규 위반이 의심되는 사안에 대한 제보 절차 및 프로그램이 문서상에 존재하나 적절히 운영되고 있지 않음	
3	내외부 이해관계자가 임직원의 비윤리적 행위 또는 법규 위반이 의심되는 사안에 대한 제보 절차 및 프로그램이 문서상에 없으나 관련 노력을 업무에 반영하고 있음	
4	내외부 이해관계자가 임직원의 비윤리적 행위 또는 법규 위반이 의심되는 사안에 대한 제보 절차 및 프로그램이 문서상에 존재하며 적절한 수준으로만 운영되고 있음	
5	내외부 이해관계자가 임직원의 비윤리적 행위 또는 법규 위반이 의심되는 사안에 대한 제보 절차 및 프로그램이 문서상에 존재하며 적극적인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음	

\*법적 근거

1. 국내법 : 『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(부패방지권익위법)』 제55조
2. 해외법 : 『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(2011)』 VII. 뇌물공여, 뇌물청탁 및 강요의 방지 (5), (6)

1-6. 고객과 협력사의 지적 재산 및 기업정보의 보호절차 및 시스템이 존재합니까?  
존재한다면 적절히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?

배점	내용	체크
1	고객과 협력사의 지적 재산 및 기업정보의 보호 절차 및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음	
2	고객과 협력사의 지적 재산 및 기업정보의 보호 절차 및 시스템이 존재하나 적절히 운영되고 있지 않음	
3	고객과 협력사의 지적 재산 및 기업정보의 보호 절차 및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으나 관련 노력을 업무에 적절히 반영하고 있음	
4	고객과 협력사의 지적 재산 및 기업정보의 보호 절차 및 시스템이 존재하나 적절한 수준으로만 운영되고 있음	
5	고객과 협력사의 지적 재산 및 기업정보의 보호 절차 및 시스템의 세부적인 사항까지 자체적으로 개발하였으며 적극적인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음	

\*법적 근거

1. 국내법 : 『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(약칭 : 상생협력법)』 제24조의 2
2. 해외법 : 『EICC(전자산업시민연대) (2016)』 기업 윤리 (6) 지적 재산권

1-7. 비윤리적 행위 또는 법규 위반에 대한 보고 내용을 조사하고 징계행위를 취하는 절차 및 프로그램이 문서상에 존재합니까? 존재한다면 적절히 운영되고 있습니까?

배점	내용	체크
1	비윤리적 행위 또는 법규 위반에 대한 보고 내용을 조사하고 징계행위를 취하는 절차 및 프로그램이 존재하지 않음	
2	비윤리적 행위 또는 법규 위반에 대한 보고 내용을 조사하고 징계행위를 취하는 절차 및 프로그램이 문서상에 존재하나 적절히 운영되고 있지 않음	
3	비윤리적 행위 또는 법규 위반에 대한 보고 내용을 조사하고 징계행위를 취하는 절차 및 프로그램이 문서상에 존재하지 않으나 관련 노력을 업무에 적절히 반영하고 있음	
4	비윤리적 행위 또는 법규 위반에 대한 보고 내용을 조사하고 징계행위를 취하는 절차 및 프로그램이 문서상에 존재하나 적절한 수준으로만 운영되고 있음	
5	비윤리적 행위 또는 법규 위반에 대한 보고 내용을 조사하고 징계행위를 취하는 절차 및 프로그램이 문서상에 존재하며 적극적인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음	

\*법적 근거

1. 국내법 : 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『제13조』 ,  
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『제5조』 , 근로기준법 제23조
2. 해외법 : EICC(전자산업시민연대) 행동규범 (2016) 『노동 (5) 인도적 대우』

1-8. 비윤리적 행위 또는 법규 위반이 의심되는 사안에 대한 제보하는 구성원의 신원을 보호하는 절차 및 프로그램이 문서상에 존재합니까? 존재한다면 적절히 운영되고 있습니까?

배점	내용	체크
1	비윤리적 행위 또는 법규 위반이 의심되는 사안에 대한 제보하는 구성원의 신원을 보호하는 절차 및 프로그램이 존재하지 않음	
2	비윤리적 행위 또는 법규 위반이 의심되는 사안에 대한 제보하는 구성원의 신원을 보호하는 절차 및 프로그램이 문서상에 존재하나 적절히 운영되고 있지 않음	
3	비윤리적 행위 또는 법규 위반이 의심되는 사안에 대한 제보하는 구성원의 신원을 보호하는 절차 및 프로그램이 문서상에 존재하지 않으나 관련 노력을 업무에 반영하고 있음	
4	비윤리적 행위 또는 법규 위반이 의심되는 사안에 대한 제보하는 구성원의 신원을 보호하는 절차 및 프로그램이 문서상에 존재하나 적절한 수준으로만 운영되고 있음	
5	비윤리적 행위 또는 법규 위반이 의심되는 사안에 대한 제보하는 구성원의 신원을 보호하는 절차 및 프로그램이 세부적인 사항까지 문서상에 포함하고 있으며 적극적인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음	

\*법적 근거

1. 국내법 : 『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(부패방지권익위법)』 제62조,  
『공익신고자 보호법』 제3조
2. 해외법 : 『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(2011)』 II.일반정책 (9),  
『EICC(전자산업시민연대) 행동강령 (2016)』 기업 윤리 (6)신원보호와 보복금지

1-9. 고객과 협력사의 개인정보 보호 절차 및 시스템이 존재합니까?

존재한다면 적절한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?

배점	내용	체크
1	고객과 협력사의 개인정보 보호 절차 및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음	
2	고객과 협력사의 개인정보 보호 절차 및 시스템이 존재하나 적절히 운영되고 있지 않음	
3	고객과 협력사의 개인정보 보호 절차 및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으나 관련 노력을 업무에 적절히 반영하고 있음	
4	고객과 협력사의 개인정보 보호 절차 및 시스템이 존재하나 적법한 수준으로만 운영되고 있음	
5	고객과 협력사의 개인정보 보호 절차 및 시스템의 세부적인 사항까지 자체적으로 개발하였으며 적극적인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음	

\*법적 근거

1. 국내법 : 『개인정보 보호법』 제 3조
2. 해외법 : 『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(2011)』 VIII. 소비자 보호 (6), 『EICC(전자산업시민연대) (2016)』 기업 윤리 (8)개인정보 보호

## 2. 인권 경영

2-1. 최근 3년간 『근로기준법』 및 동법 시행령 위반으로 벌금 또는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까? 위반 사례가 없다면 사전에 위반 사례 예방 및 위반 사례를 예방하기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습니까?

배점	내용	체크
1	최근 1년간 『근로기준법』 및 동법 시행령 위반으로 벌금 또는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사례 있음(규정 위반 이유와 위반 횟수 명시)	
2	최근 3년간 『근로기준법』 및 동법 시행령 위반으로 벌금 또는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사례 있음(개인정보 유출, 관리규정 위반 등 이유와 위반 횟수 명시)	
3	『근로기준법』 및 동법 시행령 위반 사례 없음	
4	『근로기준법』 및 동법 시행령 위반 사례 없으며 관련 법령 개정의 경우 내부규정을 개정하여 사전에 위반사례를 예방함	
5	『근로기준법』 및 동법 시행령 위반 사례 없으며 발생 가능한 위반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함	

\*법적 근거

1. 국내법 : 『근로기준법』 전문
2. 해외법 : 『ILO RULES OF THE GAME A brief introduction to International Labour Standards (2014)』 Migrant Workers - Migration for Employment Convention (Revised), 1949 (No. 97)

2-2. 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을 관리합니까? 한다면 근로자들이 임금산정 이전에 개인의 근로시간 기록을 확인할 수 있고 임금 내역서를 함께 제공해줍니까?

배점	내용	체크
1	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을 관리하지 않음	
2	근로자들은 개인의 근로시간 기록을 별도 제공받거나 확인하지 않음	
3	근로자들은 개인의 근로시간 기록을 임금 내역서와 함께 제공받음	
4	근로자들은 임금산정 이전에 개인의 근로시간 기록을 확인할 수 있음	
5	근로자들은 임금 산정 이전에 개인의 근로시간을 기록한 후 서명함	

\*법적 근거

1. 국내법 : 『근로기준법』 제 50조, 제 51조
2. 해외법 : 『ILO RULES OF THE GAME A brief introduction to International Labour Standards (2014)』 Working Time - Hours of Work (Industry) Convention, 1919 (No. 1), Hours of Work (Commerce and Offices) Convention, 1930 (No. 30), 『EICC(전자산업시민연대) 행동규범 (2016)』 노동(3) 근로시간

2-3. 초과근무는 초과근무 희망 근로자에 한해 배정합니까? 희망 근로자에 한해 배정 중이라면 초과근무 내역을 기록, 주 60시간 근로시간 등을 적법하고 적절하게 관리하고 있습니까?

배점	내용	체크
1	근로자 동의 없이 초과 근무하는 근로자 존재	
2	초과근무 희망 근로자에 한해 초과근무를 배정했으나 초과근무 내역을 기록하지 않음	
3	초과근무 희망 근로자에 한해 초과근무를 배정했으나 주 60시간을 넘음	
4	초과근무 희망 근로자에 한해 초과근무를 배정했으나 계산방법, 기록형태 등이 적절하게 운영되지 못함	
5	초과근무 희망 근로자에 한해 초과근무를 배정하고 적법한 수준에서 관리되고 있음	

\*법적 근거

1. 국내법 : 『근로기준법』 제 53조, 제 56조, 『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(약칭 : 기간제법)』 제 6조

2-4. 별도의 지정 휴일이 명시되어 있습니까? 또한 주 1일 휴무는 무조건 보장되고 있습니까?

배점	내용	체크
1	별도의 지정된 휴일 없음	
2	별도의 지정된 휴일은 없으나 휴일을 허용하는 경우 존재	
3	지정 휴일이 명시되어 있으나 관련 규정이 법적 기준에 미치지 못함	
4	지정 휴일이 명시되어 있으나 주7일 근무하는 경우가 있음	
5	주1일 휴일은 무조건 보장하고 있음	

\*법적 근거

1. 해외법 : 『ILO RULES OF THE GAME A brief introduction to International Labour Standards (2014)』 Working Time - Weekly Rest (Industry) Convention, 1921 (No. 14), Weekly Rest (Commerce and Offices) Convention, 1957 (No. 106), 『EICC(전자산업시민연대) 행동규범 (2016)』 노동 (3) 근로시간



2-5. 임직원의 4대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까? 있다면 정규직뿐만이 아닌 비정규직, 일용직 등을 포함한 전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4대보험 가입을 준수하고 있습니까? 또한 준수하고 있다면 개인별 보험 산출내역을 문서화하고 있습니까?

배점	내용	체크
1	임직원의 4대보험을 가입하고 있지 않음	
2	정규직 근로자에 한해 4대보험 가입하고 있으나, 개인별 보험 산출내역서를 문서화하지 않음	
3	정규직 근로자에 한해 4대보험 가입하고 있으며, 개인별 보험 산출내역서를 문서화하고 있음	
4	정규직 근로자 뿐 아니라 비정규직, 일용직, 아르바이트 등을 포함한 전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4대보험에 가입하게 하고 있으나 개인별 보험 산출내역서를 문서화하고 있지 않음	
5	정규직 근로자 뿐 아니라 비정규직, 일용직, 아르바이트 등을 포함한 전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4대보험에 가입하게 하고 있으며 개인별 보험 산출내역서를 문서화하고 있음	

\*법적 근거

1. 국내법 : 『국민연금법』 제 8 조, 『고용보험법』 제 8 조, 『산재보험법』 제 6 조, 『건강보험법』 제 7 조

2-6. 최근 3년간 성희롱, 학대, 체벌, 언어폭력 등 비인도적 행위가 발생한 적이 있습니까?  
없다면 이외에도 모든 비인도적 행위가 발생한 적이 없습니까?  
또한 비인도적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까?

배점	내용	체크
1	최근 1년간 성희롱, 학대, 체벌, 언어폭력 등 비인도적 행위 발생한 적 있음	
2	최근 3년간 성희롱, 학대, 체벌, 언어폭력 등 비인도적 행위 발생한 적 있음	
3	비인도적 행위가 발생한 적 있으나 시정조치와 개선활동을 통해 근절함	
4	비인도적 행위 발생한 적 없음	
5	비인도적 행위 발생한 적 없으며 비인도적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함	

\*법적 근거

1. 국내법 : 『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』 제12조  
2. 해외법 : 『UN SUPPLIER CODE OF CONDUCT (2013)』 Human Rights (11) Harassment, Harsh or Inhumane Treatment, 『EICC(전자산업시민연대) 행동규범 (2016)』 노동 (5)인도적 대우

## 2-7. 사내 비인도적 행위에 대한 규정 및 징계절차가 운영되고 있습니까?

또한 교육 프로그램도 같이 운영이 되고 있으며 적절히 운영되고 있습니까?

배점	내용	체크
1	사내 비인도적 행위에 대한 규정 및 징계절차가 없음	
2	사내 비인도적 행위에 대한 규정 및 징계절차가 있으나 적절하게 운영되지 못함	
3	사내 비인도적 행위에 대한 규정 및 징계절차가 있으나 교육 프로그램은 없음	
4	사내 비인도적 행위에 대한 규정 및 징계절차와 교육 프로그램은 있으나 적절하게 운영되지 못함	
5	사내 비인도적 행위에 대한 규정 및 징계절차, 교육 프로그램이 있으며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음	

\*법적 근거

1. 국내법 : 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『제 1 3 조』 ,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『제 5 조』 , 근로기준법 『제 2 3 조』
2. 해외법 : EICC(전자산업시민연대) 행동규범 (2016) 『노동 (5)인도적 대우』

## 2-8. 비인도적 대우에 대한 고충처리 채널 및 절차가 있습니까?

있다면 규정에 따라 적절히 운영되고 있으며, 지속적인 보완 노력이 추진되고 있습니까?

배점	내용	체크
1	비인도적 대우에 대한 고충처리 채널 및 절차가 없음	
2	비인도적 대우에 대한 고충처리 채널 및 절차가 있으나 적절히 규정되지 않음	
3	비인도적 대우에 대한 고충처리 채널 및 절차가 있으나 적절히 운영되지 못함	
4	비인도적 대우에 대한 고충처리 채널 및 절차가 있음	
5	비인도적 대우에 대한 고충처리 채널 및 절차가 있으며 규정에 따라 적절히 운영되고 지속적인 보완 노력이 추진되고 있음	

\*법적 근거

1. 국내법 : 『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』 제14조, 제24조, 제25조, 『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』 제26조, 제28조

2-9. 소수자 차별 금지 관련 내부 지침 및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까? 있다면 근로자의 접근이 용이하게 되어 있으며 적절히 운영되고 내부적으로 공유가 되고 있습니까?

배점	내용	체크
1	소수자 차별 금지 관련 내부 지침 및 규정이 없음	
2	소수자 차별 금지 관련 내부 지침 및 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나 법적 기준과 다름	
3	소수자 차별 금지 관련 내부 지침 및 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며 적절히 운영/관리되고 있지 않음	
4	소수자 차별 금지 관련 내부 지침 및 규정이 적절히 운영되나 근로자의 접근이 용이하지 않음	
5	소수자 차별 금지 관련 내부 지침 및 규정이 적절히 운영되고 있으며 내부적으로 공유되고 있음	

\*법적 근거

1. 국내법 :

- 『근로기준법』 제6조, 제74조
- 『외국인근로자의국내법 : 고용 등에 관한 법률 (약칭 : 외국인고용법)』 제22조
- 『근로복지기본법』 제3조
- 『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(약칭 : 남녀고용평등법)』 제2조, 제7~11조
- 『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(약칭 : 기간제법)』 제8조, 제9조
- 『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(약칭 : 장애인고용법)』 제5조
- 『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(약칭 : 고령자고용법)』 제4조, 제4조의4

2. 해외법 :

- 『UN ' s Women ' s Empowerment Principles(2011)』 2. 동등한 기회, 포용 및 차별 철폐
- 『UN 인권선언 2016』 제 2조 1항, 제 23조 2항
- 『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(2011)』 V. 고용 및 노사관계 1(e)
- 『ILO RULES OF THE GAME A brief introduction to International Labour Standards(2014)』 Equality of Opportunity and Treatment Discrimination (Employment and Occupation) Convention, 1958 (No. 111)
- 『UN SUPPLIER CODE OF CONDUCT (2013)』 Labour (7)Discrimination
- 『EICC(전자산업시민연대) 행동규범 (2016)』 노동 (6) 차별 금지

## 2. 환경 경영

3-1. 최근 3년간 『대기환경보전법』, 『물환경보전법』, 『토양환경보전법』, 『폐기물관리법』, 『화학물질관리법』 및 동법 시행령 등 위반 사례가 있습니까?

배점	내용	체크
1	최근 1년간 『대기환경보전법』, 『물환경보전법』, 『토양환경보전법』, 『폐기물관리법』, 『화학물질관리법』 및 동법 시행령 등 위반으로 사법상 형벌, 벌금, 과료 처벌을 받았거나, 국가 및 지자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당한 경우	
2	최근 3년간 『대기환경보전법』, 『물환경보전법』, 『토양환경보전법』, 『폐기물관리법』, 『화학물질관리법』 및 동법 시행령 등 위반으로 사법상 형벌, 벌금, 과료 처벌을 받았거나, 국가 및 지자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당한 경우	
3	최근 3년간 『대기환경보전법』, 『물환경보전법』, 『토양환경보전법』, 『폐기물관리법』, 『화학물질관리법』 및 동법 시행령 등 위반으로 행정상 처분 중 금전적 처분에 해당하는 과태료, 과징금, 이행강제금 등을 처벌받은 경우	
4	최근 3년간 『대기환경보전법』, 『물환경보전법』, 『토양환경보전법』, 『폐기물관리법』, 『화학물질관리법』 및 동법 시행령 등 위반으로 행정상 처분 중 비금전적 처분에 해당하는 시정명령, 시정권고, 경고 등을 처벌받은 경우	
5	최근 3년간 『대기환경보전법』, 『물환경보전법』, 『토양환경보전법』, 『폐기물관리법』, 『화학물질관리법』 및 동법 시행령 등 위반 사례 없음	

\*법적 근거

1. 국내법 : 「환경정책기본법」, 「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」, 「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」
2. 해외법 : 「GRI standards – 307(Environmental Compliance)」, Global Reporting Initiative, 2016

3-2. 최근 3개년 에너지 사용량을 집계하고 있으나, 해당 데이터를 바탕으로 에너지 사용량 효율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까? 운영하고 있다면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되고 있습니까?

배점	내용	체크
1	최근 3개년 에너지 사용량을 집계하고 있지 않음	
2	최근 3개년 에너지 사용량을 집계하고 있으나, 해당 데이터를 바탕으로 에너지 사용량 효율 개선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 않음	
3	최근 3개년 에너지 사용량을 집계하고 있고, 에너지 사용량 효율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업무현장에 적절히 반영되고 있지 않음	
4	최근 3개년 에너지 사용량을 집계하고 있고, 에너지 사용량 효율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, 업무현장에 적절한 수준에서만 반영되고 있음	
5	최근 3개년 에너지 사용량을 집계하고 있고, 에너지 사용량 효율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음	

\*법적 근거

1. 국내법 : 「에너지법」, 「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」, 「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」
2. 해외법 : 「Corporate Sustainability Assessment Companion」, S&P Global Inc., 2021

### 3-3. 최근 3개년 원단위 온실가스 배출량을 집계하고 있으나 배출량이 감소하고 있습니까?

또한 온실가스 배출 관련 개선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까?

배점	내용	체크
1	최근 3개년 원단위 온실가스 배출량을 집계하고 있지 않음	
2	최근 3개년 원단위 온실가스 배출량을 집계하고 있으나 배출량이 증가 추세에 있으며, 온실가스 배출 관련 개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 않음	
3	최근 3개년 원단위 온실가스 배출량을 집계하고 있고 배출량에 변동이 없으나, 온실가스 배출 관련 개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 않음	
4	최근 3개년 원단위 온실가스 배출량을 집계하고 있고 배출량에 변동이 없으며, 온실가스 배출 관련 개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	
5	최근 3개년 원단위 온실가스 배출량을 집계하고 있고 배출량이 감소 추세이며, 온실가스 배출 관련 개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	

\*법적 근거

1. 국내법 : 「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」, 「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」, 2006 IPCC 국가 인벤토리 가이드라인 기본 배출계수 (제15조제1항 관련)
2. 국내 발간 자료 : 「2020년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보고서」
3. 국제법 : 「Kyoto Protocol to 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」
4. 국제표준 : 「Corporate Sustainability Assessment Companion」, S&P Global Inc.

### 3-4. 최근 3개년 원단위 폐기물 배출량을 집계하고 있고 배출량이 감소 추세에 있습니까?

또한 폐기물 재활용 및 배출량 감소를 위한 성과 개선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까?

배점	내용	체크
1	최근 3개년 원단위 폐기물 배출량을 집계하고 있지 않음	
2	최근 3개년 원단위 폐기물 배출량을 집계하고 있으나, 배출량이 증가 추세에 있으며, 폐기물 재활용 및 배출량 감소를 위한 성과 개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 않음.	
3	최근 3개년 원단위 폐기물 배출량을 집계하고 있고 배출량에 변동이 없으나, 폐기물 재활용 및 배출량 감소를 위한 성과 개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 않음.	
4	최근 3개년 원단위 폐기물 배출량을 집계하고 있고, 배출량에 변동이 없으며, 폐기물 재활용 및 배출량 감소를 위한 성과 개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.	
5	최근 3개년 원단위 폐기물 배출량을 집계하고 있고 배출량이 감소 추세에 있으며, 폐기물 재활용 및 배출량 감소를 위한 성과 개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.	

\*법적 근거

1. 국내법 : 「폐기물관리법」, 「폐기물관리법 시행령」

3-5. 최근 3개년 원단위 대기오염물질 평균 배출농도를 집계하고 있고 배출농도가 감소 추세에  
 있습니까? 또한 대기오염물질 및 화학물질관리 개선 프로그램을 운영 하고 있습니까?

배점	내용	체크
1	최근 3개년 원단위 대기오염물질 평균 배출농도를 집계하고 있지 않음	
2	최근 3개년 원단위 대기오염물질 평균 배출농도를 집계하고 있으나, 배출농도가 증가 추세에 있으며, 대기오염물질 및 화학물질 관리 개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 않음.	
3	최근 3개년 원단위 대기오염물질 평균 배출농도를 집계하고 있고 배출농도에 변동이 없으나, 대기오염물질 및 화학물질 관리 개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 않음.	
4	최근 3개년 원단위 대기오염물질 평균 배출농도를 집계하고 있고 배출농도에 변동이 없으나, 대기오염물질 및 화학물질 관리 개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.	
5	최근 3개년 원단위 대기오염물질 평균 배출농도를 집계하고 있고 배출농도가 감소 추세에 있으며, 대기오염물질 및 화학물질 관리 개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.	

\*법적 근거

1. 국내법 : 「대기환경보전법」, 「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」, 「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」, 「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
2. 국제표준 : 「GRI Standards- 305(Emission)」

3-6. 최근 3개년 원단위 용수 사용량을 집계하고 있고 사용량이 감소 추세에 있습니까?  
 또한 용수 재활용 및 사용량 감소를 위한 성과 개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까?

배점	내용	체크
1	최근 3개년 원단위 용수 사용량을 집계하고 있지 않음	
2	최근 3개년 원단위 용수 사용량을 집계하고 있으나, 사용량이 증가 추세에 있으며, 용수 재활용 및 사용량 감소를 위한 성과 개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 않음.	
3	최근 3개년 원단위 용수 사용량을 집계하고 있고 사용량에 변동이 없으나, 용수 재활용 및 사용량 감소를 위한 성과 개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 않음.	
4	최근 3개년 원단위 용수 사용량을 집계하고 있고, 사용량에 변동이 없으며, 용수 재활용 및 사용량 감소를 위한 성과 개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.	
5	최근 3개년 원단위 용수 사용량을 집계하고 있고 사용량이 감소 추세에 있으며, 용수 재활용 및 사용량 감소를 위한 성과 개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.	

\*법적 근거

1. 국내법 : 「물관리기본법」, 「물환경보전법」
2. 국제표준 : 「Corporate Sustainability Assessment Companion」, S&P Global Inc.)

## 4. 안전 경영

4-1. 『산업안전보건법』 및 동법 시행령 위반 사례가 있습니까? 없다면 내부규정을 개정하여 사전에 위반 사례를 예방, 발생가능한 위반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까?

배점	내용	체크
1	최근 1년간 『산업안전보건법』 및 동법 시행령 위반으로 벌금 또는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사례 있음(규정 위반 이유와 위반 횟수 명시)	
2	최근 3년간 『산업안전보건법』 및 동법 시행령 위반으로 벌금 또는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사례 있음(개인정보 유출, 관리규정 위반 등 이유와 위반 횟수 명시)	
3	『산업안전보건법』 및 동법 시행령 위반 사례 없음	
4	『산업안전보건법』 및 동법 시행령 위반 사례 없으며 관련 법령 개정의 경우 내부규정을 개정하여 사전에 위반사례를 예방함	
5	『산업안전보건법』 및 동법 시행령 위반 사례 없으며 발생 가능한 위반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함	

\*법적 근거

1. 국내법 :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「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」, 「산업안전보건법」, 「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」, 「안전보건경영시스템(KOSHA-MS) 인증업무 처리규칙」
2. 국제표준 : 「ISO 45001」

4-2. 최근 3년간 산업재해율이 감소추세에 있습니까?

또한 직전 1개년 산업재해율이 당해 년도 산업 평균 미만입니까?

배점	내용	체크
1	최근 3년간의 산업재해율 정보를 관리하고 있지 않음	
2	최근 3년간 산업재해율이 증가추세에 있음(사건 발생 이유와 사망자 수, 재해율 명시)	
3	최근 3년간 산업재해율에 변동 없음(사건 발생 이유와 사망자 수, 재해율 명시)	
4	최근 3년간 산업재해율이 감소추세에 있음(사건 발생 이유와 사망자 수, 재해율 명시)	
5	최근 3년간 산업재해율이 감소추세에 있으며, 직전 1개년 산업재해율이 당해년도 산업 평균 미만임	

\*법적 근거

1. 국내법 : 「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, 「산업재해통계업무처리규정」
2. 국제표준 : 「GRI Standards - 403(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)」, 「Corporate Sustainability Assessment Companion」

4-3. 유해화학물질, 소음, 분진 등 근로자의 위험요인 노출 예방 프로세스 및 작업환경 정기평가가 문서상에 존재합니까? 존재한다면 적극적인 수준으로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?

배점	내용	체크
1	유해화학물질소음분진 등 근로자의 위험요인 노출 예방 프로세스가 존재하지 않음	
2	유해화학물질소음분진 등 근로자의 위험요인 노출 예방 프로세스 및 작업환경 정기평가가 문서상에 존재하나 적절히 운영되고 있지 않음	
3	유해화학물질소음분진 등 근로자의 위험요인 노출 예방 프로세스 및 작업환경 정기평가가 문서상에 존재하지 않으나 관련 노력을 업무에 반영하고 있음	
4	유해화학물질소음분진 등 근로자의 위험요인 노출 예방 프로세스 및 작업환경 정기평가가 문서상에 존재하며 적절한 수준으로만 운영되고 있음	
5	유해화학물질소음분진 등 근로자의 위험요인 노출 예방 프로세스 및 작업환경 정기평가가 문서상에 존재하며 적극적인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음	

\*법적 근거

1. 국내법 :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「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」, 「산업안전보건법」, 「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」, 「안전보건경영시스템(KOSHA-MS) 인증업무 처리규칙」
2. 국제표준 : 「ISO 45001」

4-4. 산업재해 리스크 평가 체계 및 프로세스가 존재합니까? 또한 프로세스 내에 재해 리스크 원인의 파악 및 제거 조치가 포함되어 있고 적극적인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까?

배점	내용	체크
1	산업재해 리스크 평가 체계 및 프로세스가 존재하지 않음	
2	산업재해 리스크 평가 체계 및 프로세스가 존재하나 적절히 운영되고 있지 않음	
3	산업재해 리스크 평가 체계 및 프로세스가 존재하며, 프로세스 내에 재해 리스크 원인의 파악 및 제거 조치가 포함되어 있지만 적절히 운영되고 있지 않음	
4	산업재해 리스크 평가 체계 및 프로세스가 존재하며, 프로세스 내에 재해 리스크 원인의 파악 및 제거 조치가 포함되어 있지만 적절한 수준으로만 운영되고 있음	
5	산업재해 리스크 평가 체계 및 프로세스가 존재하며, 프로세스 내에 재해 리스크 원인의 파악 및 제거 조치가 포함되어 있고 적극적인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음	

\*법적 근거

1. 국내법 : 「산업안전보건법」, 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, 「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
2. 국제표준 : 「GRI Standards」, 「ISO 31000」



4-5. 현장 근로자의 필수 안전장비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습니까? 또한 작업 전, 후 주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,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과 장비 모니터링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까?

배점	내용	체크
1	현장 근로자의 필수 안전장비 착용 여부를 관리하고 있지 않음	
2	현장 근로자의 필수 안전장비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주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지는 않음	
3	현장 근로자의 필수 안전장비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으며, 작업 전, 후 주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음	
4	현장 근로자의 필수 안전장비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으며, 작업 전, 후 주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,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음	
5	현장 근로자의 필수 안전장비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으며, 작업 전, 후 주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,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과 장비 모니터링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음	

\*법적 근거

1. 국내법 :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「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」, 「산업안전보건법」, 「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」, 「안전보건경영시스템(KOSHA-MS) 인증업무 처리규칙」
2. 국제표준 : 「ISO 45001」